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개혁 및 국방분야 국정과제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 국방전략위원회가 전문 역량을 발휘하고 위원회와 정부기관 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202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 기정예산에서 대체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및 국방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8. 7. ~ 8.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운영 지원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8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별표 4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0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8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4급 또는 5급 이하	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한시정원)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30조(한시정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운영 지원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8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6